6 (제235회 - 제1차 부록)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적극적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도농복합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산업단지개발추진단 상시화 근거 마련 (안 제3조)

○ 실·과·단 설치 조항

- 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 → 산업단지개발추진단

나.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의 한시적 운영기간을 정한 부칙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1조

○ ‘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)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: ‘18. 7.5.~ ’18. 7.25.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”을 “산업단지개발추진단”으로 한다.
조례 제2028호(2013.03.11.)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・과・단의 설치)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총무과, 재무과, 민원봉사과, 주민복지과, 문화관광과, 환경보호과, 농정과, 새마을체육과, 경제교통과, 도시건축과, 산림과, 안전건설과, 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을 둔다.	제3조(실・과・단의 설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산업단지개발추진단----------.
부 칙(2013.03.11, 조례 제2028호)	부 칙(2013.03.11, 조례 제2028호)
제2조(한시기구) 이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은 2018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.	제2조 (삭제)